



##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연구실안전법 )

[시행 2022. 6. 10.] [법률 제17350호, 2020. 6. 9., 전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과학기술안전기반팀) 044-202-4852, 4856

- 제20조(교육 · 훈련)**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 
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 ·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 
③ 제10조제1항 ·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  
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 ·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 
⑤ 제2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의 내용과 방법, 교육 · 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##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)

[시행 2022. 6. 10.] [대통령령 제32458호, 2022. 2. 22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과학기술안전기반팀) 044-202-4852, 4856

**제16조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· 훈련)**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 ·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 · 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. <[개정 2022. 2. 22.](#)>

1.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정기점검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람. 다만,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.

2.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

3. 연구실책임자

4.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

5.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 · 훈련을 이수한 사람

6. 연구실안전관리사

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·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1. 신규 교육 · 훈련: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· 훈련

2. 정기 교육 · 훈련: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· 훈련

3. 특별안전 교육 · 훈련: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· 훈련

③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.

1. 신규교육: 연구실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

2. 보수교육: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.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· 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


##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)

[시행 2022. 7. 1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, 2021. 12. 31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과학기술안전기반팀) 044-202-4852, 4856

- 제10조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· 훈련)**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 · 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.  
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.  
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 · 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<[신설 2021. 12. 31.](#)>

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저위험연구실(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관련)

"저위험연구실"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.

1.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

- 연구활동에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
- 연구활동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
-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

2. 화학물질, 가스, 생물체,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(摘出物),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

3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70조, 제71조, 제74조제1항제1호,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

4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

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(제10조제1항 관련)

구분	교육대상		교육시간 (교육시기)	교육내용
1. 신규 교육 · 훈련	근로자	가. 영 제11조제2항 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 구활동종사자	8시간 이상 (채용 후 6 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</li> <li>•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 항</li> <li>• 연구실사고 사례,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</li> </ul>
		나. 영 제11조제2항 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 규로 채용된 연구 활동종사자	4시간 이상 (채용 후 6 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실사고 사례,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	근로자 가 아닌 사람	다. 대학생, 대학원 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 동종사자	2시간 이상 (연구활동 참여 후 3 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</li> <li>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</li> <li>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2. 정기 교육 · 훈련	가.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		연간 3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</li> <li>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</li> <li>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	나.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		반기별 6시 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</li> <li>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</li> <li>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	다.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		반기별 3시 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</li> <li>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</li> <li>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
3. 특별안전 교육 · 훈련	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

#### 비고

1. 제1호에서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2.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 ·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(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)의 정기 교육 ·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3.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 · 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